보건복지부	보도자료	APEC 2025 KOREA

보도시점	2025. 11. 4.(화)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 이후	배포	2025. 11. 4.(화)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장기요양 1·2등급자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20만 원 이상 인상 -
- 장기요양 1·2등급자가 보다 쉽게 돌봄을 받도록 방문요양·목욕 중증 가산 확대·신설 -
- 장기근속장려금 확대(전체 종사자의 14.9%→37.6%), 금액 인상(월 최대 18만 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4일**(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하였다.

○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 1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22년 101.9만 명, '23년 109.8만 명, '24년 116.5만 명)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23~'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 약 2조 원** 증가 vs **지출 약 2.7조 원** 증가

○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1.48%)하기로 **결정**하였다.

< 최근 장기요양보험료율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소득대비 보험료율	0.6837%	0.7903%	0.8577%	0.9082%	0.9182%	0.9182%	0.9448%
건보료대비 보험료율	10.25%	11.52%	12.27%	12.81%	12.95%	12.95%	13.14%

2.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2026년도에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과제**를 **논의**하였다.

< 제도개선 과제 1. 수급자 보장성 강화 >

□ 우선,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 8,920 ~ 24만 7,800원** 늘어난다.

○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인상**한 결과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 '26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단위:원)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6년 (전년대비)	**2,512,900 (+206,500)**	**2,331,200 (+247,800)**	**1,528,200 (+42,500)**	**1,409,700 (+39,100)**	**1,208,900 (+31,900)**	**676,320 (+18,920)**

□ 또한, **중증** 및 **치매 수급자**의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1일**의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를 **연 12일**로 **확대**(단기보호 11일→12일, 종일방문요양 22회→24회)한다.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요양 서비스 제공
► (**종일방문요양**) **12시간 이상 방문요양**(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지원,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제공

○ 이와 더불어,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 **방문요양 중증 가산** : (**기존**) 1회 **180분 이상 제공** 시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 가산**
☞ (**개선**) 가산 기준을 **시간당 2,000원**으로 변경하여 **1인당 일 최대 6,000원 지급**
► **방문목욕 중증 가산** : **중증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 건별 지급** 신설

□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시범사업** 등 **재가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한다.

○ **보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요청 시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파견**하여 **수급자**의 **병원동행**을 **지원**하게 된다.

○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 등 **안전 품목**을 **설치**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과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은 **추후 세부 사업 모형**을 **확정**한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장기요양 어르신**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업 모형**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제도개선 과제 2. 종사자 처우개선 >

□ **신규 돌봄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기존 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 우선, **종사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운영 중**인 **장기근속 장려금**이 **종사자 처우**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을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근무연수 기준 완화**)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신규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종사자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내년**부터는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 (**지급대상**) **기존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에 더하여 **감염병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생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대상 확대**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기존)에서 **'26년 37.6%로 확대**가 **예상**된다.

* (**기존 지급 대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방문형), 조리원·영양사(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 (**금액 인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월 5만 원**의 **장려금 지급**을 **신설**하고, 근속 기간에 따라 **6/8/10만 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대 **월 18만 원까지 인상**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시에는 **입소형 종사자**의 **업무여건**과 **구인난**을 **고려**하여 방문형 기관 종사자에 비해 **더 많은 장려금 지급***을 **의결**하게 되었다.

* (**방문형**) 3/5/7년 11/13/15만원 지급(현재 6/8/10만원에 +5만원)
(**입소형**) 3/5/7년 14/16/18만원 지급(현재 6/8/10만원에 +8만원)

< 근속기간에 따른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액 >

근속기간	0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
기존	-	-		6만원		8만원		10만원					
개선	-	5만원		방문 11만원 입소 14만원		방문 13만원 입소 16만원		방문 15만원 입소 18만원					

□ 한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종사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입소형 월 120시간, 방문형 월 60시간의 최소 근무시간 준수 필요)을 **지급**하는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도 신설한다.

*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의 **중복 지역**을 **인력수급취약지역**으로 **지정**(세부 지역 및 지급 방안 등은 연말 고시 예정)

○ 아울러, **일정 조건**(5년 이상 근무, 40시간의 승급교육 이수)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매월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25년 대비 선임 요양보호사**를 **약 3,000명 확대**할 **예정**(3,600명 ☞ 약 6,500명 목표)이다.

* (**기존**)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대상 → (**개선**) **기존 대상** +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로 대상 확대

○ 이와 같은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라 **근속 7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의 수당**(장기근속장려금 18만 원+농어촌 지역 지원금 5만 원+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 제도개선 과제 3.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

□ 내년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과 함께 보다 **내실 있는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 우선,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24시간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수행기관** : **30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중 **요양보호사 가산 기관**
- **서비스 내용**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 제공**(단기보호기관 침실기준 충족 필요, 야간 요양보호사 1인 배치 필요, 급여일수는 단기보호-가족휴가제 기준 준용)
- **이용인원** : **주야간보호 정원별 1일 4~8명**(30~39인 4명, 40~49인 6명, 50인이상 8명)

□ 이와 함께 그간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및 **의료-요양 연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 확충**을 지속할 예정이다.

> ▸ **재택의료센터** : **거동 불편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 및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現 192개소 → '26. 250개소 목표)
> ▸ **통합재가기관 : 한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의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중심**의 **다양한 재가급여**를 **결합**하여 제공(現 203개소 → '26. 350개소 목표)

○ 아울러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및 전문요양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 **유니트케어** :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9인 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現 25유니트 → '26. 80유니트 목표)
> ▸ **전문요양실 :** 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 제공(現 52개소 → '26. 90개소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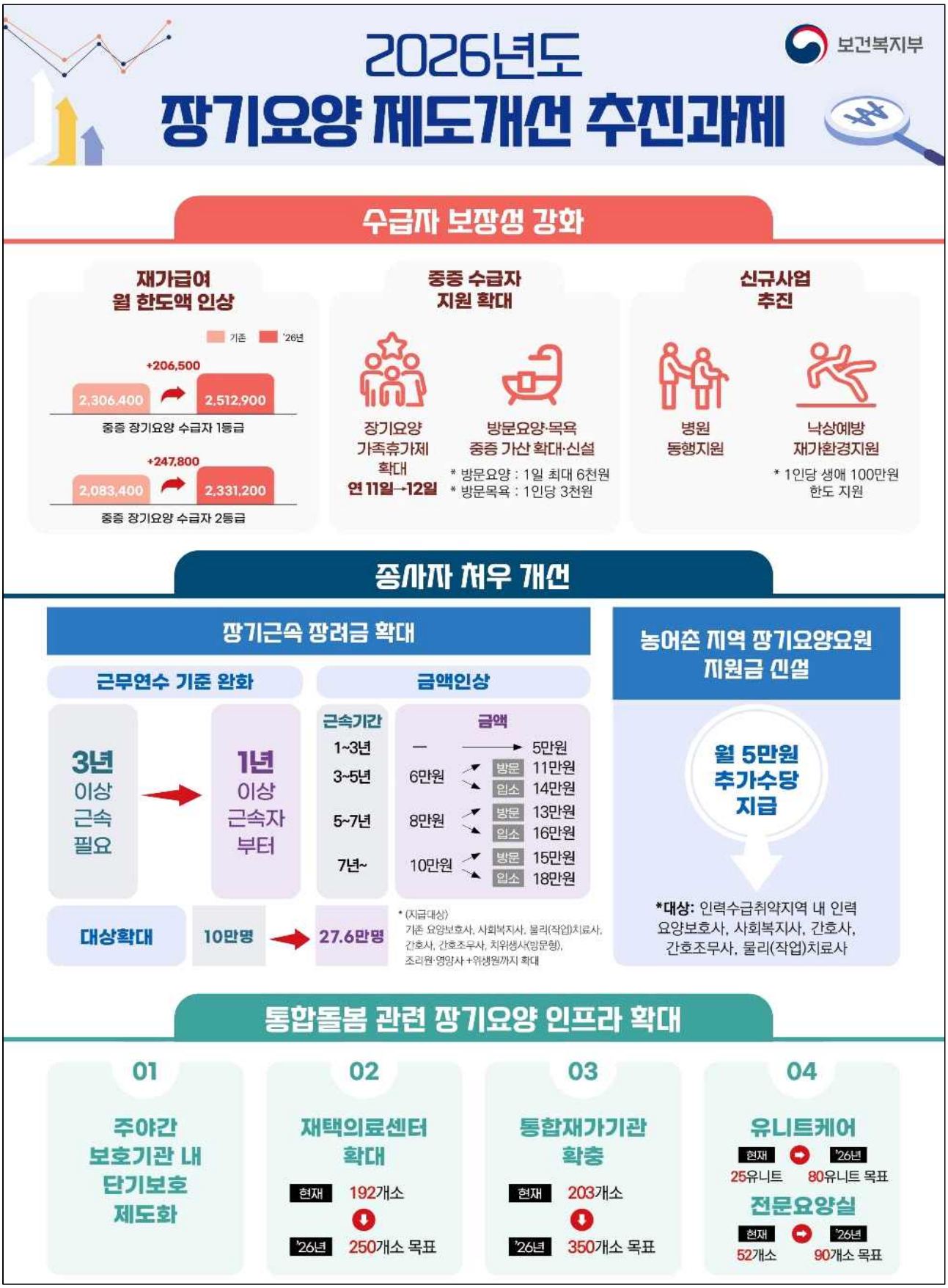
□ **이스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 과제
2. '26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담당 부서 <수가,보험료율> <위원회> <재택의료> <통합재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책임자	과 장	윤수현 (044-202-3490)
		담당자	사무관	김준범 (044-202-3499)
		담당자	사무관	유경성 (044-202-3493)
		담당자	사무관	한 샘 (044-202-3494)
		담당자	사무관	홍명기 (044-202-3492)
<요양보호사> <기관 운영>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책임자	과 장	김도균 (044-202-3510)
		담당자	서기관	최종천 (044-202-3514)
		담당자	사무관	안희정 (044-202-351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PEC 2025 KOREA 10.27.~11.1. 경주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 과제



붙임2 '26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5년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6년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인상률	8.95%	11.89%	2.86%	2.85%	2.71%	2.88%

<2026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① 노인요양시설

(단위 : 원)

등급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26년 수가	'26년 본인부담
1	90,450	18,090	93,070	18,614
2	83,910	16,782	86,340	17,268
3,4,5	79,240	15,848	81,540	16,308

② 공동생활가정

(단위 : 원)

등급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26년 수가	'26년 본인부담
1	72,480	14,496	74,590	14,918
2	67,250	13,450	69,210	13,842
3,4,5	62,000	12,400	63,800	12,760

③ 주야간보호

(단위 : 원)

등급		'25년		'26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	40,650	6,098	41,820	6,273
	2	37,630	5,645	38,720	5,808
	3	34,740	5,211	35,740	5,361
	4	33,160	4,974	34,120	5,118
	5	31,580	4,737	32,490	4,874
	인지지원	31,580	4,737	32,490	4,874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	54,490	8,174	56,060	8,409
	2	50,470	7,571	51,930	7,790
	3	46,590	6,989	47,940	7,191
	4	45,000	6,750	46,300	6,945
	5	43,400	6,510	44,650	6,698
	인지지원	43,400	6,510	44,650	6,698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	67,770	10,166	69,730	10,460
	2	62,780	9,417	64,590	9,689
	3	57,960	8,694	59,640	8,946
	4	56,380	8,457	58,010	8,702
	5	54,780	8,217	56,360	8,454
	인지지원	54,780	8,217	56,360	8,454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	74,660	11,199	76,820	11,523
	2	69,160	10,374	71,160	10,674
	3	63,900	9,585	65,750	9,863
	4	62,290	9,344	64,090	9,614
	5	60,710	9,107	62,460	9,369
	인지지원	54,780	8,217	56,360	8,454
13시간 초과	1	80,060	12,009	82,370	12,356
	2	74,170	11,126	76,310	11,447
	3	68,520	10,278	70,500	10,575
	4	66,930	10,040	68,860	10,329
	5	65,350	9,803	67,240	10,086
	인지지원	54,780	8,217	56,360	8,454

④ 단기보호

(단위 : 원)

등급	'25년		'26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1	71,970	10,796	74,060	11,109
2	66,640	9,996	68,580	10,287
3	61,560	9,234	63,350	9,503
4	59,940	8,991	61,680	9,252
5	58,300	8,745	60,000	9,000

⑤ 방문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5년		'26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30분	16,940	2,541	17,450	2,618
60분	24,580	3,687	25,320	3,798
90분	33,120	4,968	34,120	5,118
120분	42,160	6,324	43,430	6,515
150분	49,160	7,374	50,640	7,596
180분	55,350	8,303	57,020	8,553
210분	61,670	9,251	63,530	9,530
240분	68,030	10,205	70,080	10,512

⑥ 방문목욕

(단위 : 원)

구분	'25년		'26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6,480	12,972	88,990	13,349
차량이용(가정 내)	77,970	11,696	80,230	12,035
차량 미 이용	48,690	7,304	50,100	7,515

⑦ 방문간호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5년		'26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15분~30분 미만	41,710	6,257	42,880	6,432
30분~60분 미만	52,310	7,847	53,770	8,066
60분 이상	62,930	9,440	64,690	9,704